

2019년도 『지능형 로봇개발 및 제품상용화 촉진사업』  
지원대상 기업 모집

경북지역 로봇기업의 시장창출 기회 마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「2019년 지능형 로봇개발 및 제품상용화 촉진사업」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(R&BD)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9년 04월 30일

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

1. 사업개요

□ (사업목적)

- 지역로봇기업의 제품화 가능한 신규 아이템 제품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지원
  - 경북 로봇산업 육성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『경북 로봇산업 10대 전략 특화분야』 방향에 부합하는 상용화 지원
  - 사업화연계 R&BD를 통한 경북 로봇기업의 제품 상용화 촉진 기술개발 지원
- 기업의 지능로봇 제품의 지적권 확보·인증·마케팅·판매 등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필요로 하는 외부지원을 분야별 맞춤형 지원

□ (지원기간) 협약일 ~ 2019. 11. 30 (약 7개월)

□ (지원규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 기업  | 지원 금액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업화연계 R&BD + 전주기 패키지 지원 | 4개사 내외 | 기업당 40백만원 내외 |

\* 지원금액·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

- 사업비 편성 기준 : 사업화연계 R&BD(60% 이하) + 패키지지원(40% 이상)
  -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 불가
  - 회의비, 여비 등 간접 지원 경비성 지출 집행 불가
- 기업부담금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매칭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화연계 R&BD+전주기 패키지 지원 | 지원 사업비의 20%이상(현금 50% 이상 부담 필수) |

□ (지원내용) 기업의 사업아이템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연계 R&BD와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쏠분야 지원

| 지원분야       | 지원범위  |
|------------|---|
| 사업화연계 R&BD |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, 자사 제품의 부품(부분품) 개선, 성능개선, 시제품(시작품) 제작 |
| 전주기 패키지 지원 | 지재권 창출, 마케팅, 전문가 컨설팅 등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쏠분야                |

## 2. 지원 세부 내용

□ (기본방향) 경북도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사업아이템 상용화 촉진 개발,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(R&BD)을 위한 지원 및 스마트팩토리, 4차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경북 로봇산업 활성화

□ (지원내용) 기업의 사업아이템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연계 R&BD와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쏠분야 지원

○ 구성 : ① 사업화연계 R&BD(유형 1개 필수) + ② 전주기 패키지(유형 1개 이상)

\* 예) 사업화연계 R&BD + 지식재산권 창출 + 마케팅 지원 ..... ※ 지원내용 유형 참고

○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
\* 예) 타 사업, 제품 관련 지재권출원, 타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는 지원불가

< 지원내용 유형 >

| 지원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형  | 내용(목적)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사업화연계 R&BD                      | 아이템 고도화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수요기반 기술개발지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품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개발</li> <li>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시제품/시제품 제작</li> <li>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존 제품(기술)의 기능 및 성능 개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선택             |
| 전주기 패키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① 기술가치평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유 제품 및 기술의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가치 검증 지원</li> </ul>   | ①~⑦ 중 1개 이상 선택 필수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전문가 컨설팅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BM검증 및 사업성 검토, 매출(제품판매) 전략수립 컨설팅</li> <li>보유 제품 및 기술의 R&amp;D 기획, 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</li> <li>로봇기업 창업절차대행(법인설립·전환)</li> <li>사업화 관련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지식재산권 창출 및 강화(특허, 상표권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/외 특허(상표) 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관련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성능(시험)평가/인증취득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, 수정 및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</li> <li>※ 반드시 성능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</li> </ul>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마케팅 지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/외 전시회 참가비, 홍보물 제작 및 제품 광고비, 상품 브랜드, 디자인 제작 등</li> </ul>   |                   |
| ⑥ 로봇기업 유치 및 정착지원 (경북지역 외 기업 대상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북 내 로봇기업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 (시설 및 비품 구축 비용, 사무실 이전, 임대비용 지원 가능)</li> </ul> |   |                   |

※ 상기 지원·유형 외에도 사업화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지원 가능함

※ 성능평가 :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(사업화)에 있으며 따라서, 실제 성능 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(SPEC) 제시

※ 성능평가기관 :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(KOLAS) 등

※ 제안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, 기존 개발된 제품을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(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)

### 3.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

#### □ (지원대상)

- 경상북도 소재 기업
  - \* 단, 협약체결일 전 또는 2019년 이내 경북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
- 로봇기술과 지역특화분야를 융합한 시장 진출가능 제품 보유기업
  - \* 단,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#### <경북 로봇산업 전략 특화분야>

##### - 경상북도 로봇산업 발전 10대 프로젝트

- ① 해양로봇 ② 항만물류 무인이동체 ③ 철강자동화 ④ 안전&산업
- ⑤ 국방&소방 ⑥ 스마트센서 ⑦ 가전로봇 ⑧ 의료로봇 ⑨ 기계&베어링
- ⑩ 문화로봇

※ 기타 문의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의 협의 요망

#### □ (우대사항)

- ① 개발된 상용화 제품에 대한 수요기업(구매 확약) 既 확보 기업

#### □ (지원제외)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기업, 기업 대표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### 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
- \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### 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- \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### 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1))

### ☞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
- \*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, 5천만원을 자본금의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(단, 별도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)

### ☞ 기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## 4. 추진절차 및 일정

| 추진절차                    | 추진체계             |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   | '19. 4. 30(화) ~ 5. 22(수) |
|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 ⇨ 한국로봇융합연구원 | '19. 5. 22(수)            |
|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      | '19. 5. 23(목) ~ 5. 24(금) |
| 선정평가<br>(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) | 평가위원회            | '19. 5. 28(화)            |
| 선정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⇨ 선정기업 | '19. 5. 29(수)            |
| 협약체결 및<br>사업비 지급       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⇨ 선정기업 | '19. 5. 31(금)            |
| 사업수행                   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& 선정기업 | 협약일 ~ 11. 30             |
| 중간점검                    | 한국로봇융합연구원 ⇨ 선정기업 | '19. 9월 초                |
| 결과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 | 선정기업             | '19. 11. 30              |
| 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 | 평가위원회            | '19. 12월 초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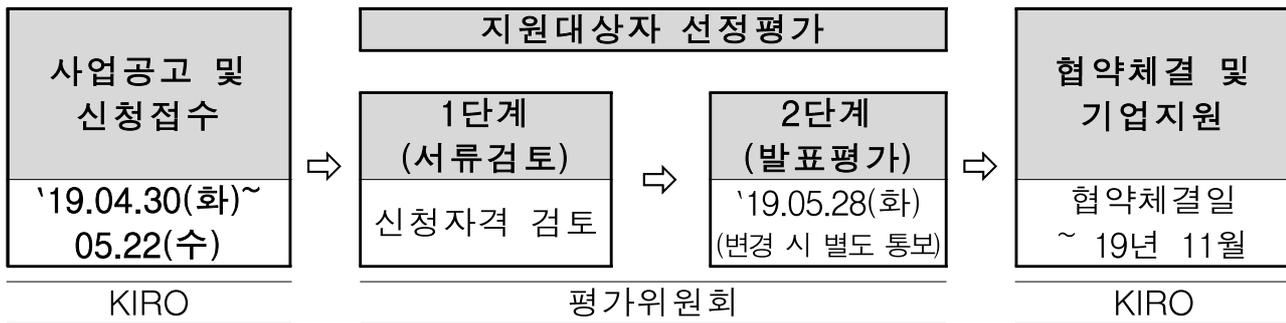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1) 1. 금융 및 보험업, 2. 부동산업, 3.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, 4. 무도장운영업, 5.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6.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, 7.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, 8.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## 5. 평가방법 및 항목

### □ (평가절차)

- 평가방향 : 기업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·적정성,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, 제품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 선정
- 선정절차



### □ 선정기준

- 평가지표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| 배점  | 평가 착안사항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사업계획<br>의 타당성<br>(25점)       | 사업화 개발<br>목표의 타당성 | 10  | · 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<br>· 목표달성 가능성<br>·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추진<br>내용의 적정성  | 15  | ·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<br>·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|
| 상용화<br>성공<br>가능성<br>(60점)    | 상용화 전략            | 40  | ·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, 성장가능성<br>· 상품화 및 시제품 제작 방안의 구체성<br>·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<br>·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<br>·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<br>· R&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<br>진출 가능성      | 20  | · 관련 제품 매출·수출 등 시장 진출 가능성   |
| 일자리<br>창출 등<br>파급효과<br>(15점) | 일자리 창출 효과         | 10  | · 과제 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적 파급 효과         | 5   | · 상용화대상 기술·제품 및 해당산업의 경제적 효과<br>· 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 효과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100 |   |
| 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+5  | · 수요기업 확보시(5점)  |

□ (지원대상 선정)

- 발표평가 평균점수의 합계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선정(70점 미만 탈락)
- \* 지원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, 평가 및 선정결과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 계획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보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2019. 04. 30(화) ~ 05. 22(수), 18:00까지
- (접수마감) 2019. 05. 22.(수) 18:00까지
- (신청방법) 신청기한 내, 신청서 작성후 구비서류와 함께 메일로 전송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
  - 신청서 양식 :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([www.kiro.re.kr](http://www.kiro.re.kr)) 참조
  - 접수·문의처
    - 이메일 : [jyh82@kiro.re.kr](mailto:jyh82@kiro.re.kr)
    - 주소 : (우)37666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39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12호 기업지원실
    - 문의처 : 주영환 선임(☎054-279-0423, [jyh82@kiro.re.kr](mailto:jyh82@kiro.re.kr))

□ (구비서류)

| 구분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| 원본 1부, 사본 5부 |
| 2  |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| 사본 1부        |
| 3  |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 | 사본 1부        |
| 4 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   | 1부           |
| 5  |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| 1부           |
| 6  | 과제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  | 1부           |
| 7  | 참여확약서                   | 1부           |
| 8  | 현금·현물 출자 확인서            | 1부           |
| #  | 가산점 증빙서류                | 해당시 제출       |

## 7. 기타사항
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 -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바라며 사업 안내자료, 공고문 내용 등에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연구원의 해석에 따름
  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
  - 최종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지원금(시제품 제작비, 시험·분석비 등)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추가 부담하도록 함
  - 기업지원금 중,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으로 사용가능
- \*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, 부가세는 선정기업 부담 원칙